

「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호 의원

2. 찬 성 자 : 김근한 의원 외 12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,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,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, 사회적 어려움을 줄이고,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,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제6조에 지원 대상을 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”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지만,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설정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제6조 제3항의 “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”는 규정은 중복지원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타당하나, 실제 현장의 한부모가족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.